

1999. 10.

제정 및 개정, 폐지 조례 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
-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
-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
-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'99. 9. 21	'99. 9. 21	'99. 9. 29	'99. 9. 29	회계과
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	"	"	"	"	사 회 진 흥 과
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	"	"	"	"	가 정 복 지 과
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"
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	"	"	"	"	"
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지 적 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'99. 4.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개정, 보완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심의 생략 규정을 명문화 함.
- 농경지로 임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.
- 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던 공용면적을 부지에도 적용함.
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탁 규정 신설

나.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.

2) 주요골자

○지정기준 및 대상

-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
 - 윤락가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
-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
 -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
 - 청소년 유해한 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
 - 관할 지역주변 1,000명 이상 요구지역

○통행금지 및 제한시간

- 통행금지 시간 : 24시간 통행금지
- 통행제한 시간 :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

○지정절차

-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찰서,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

다.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코자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함.

2) 주요골자

○기금의 재원

- 충주시의 출연금
-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기타수익금

○기금의 용도

-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-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
-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지원
-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
- 기타 충주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○기금의 운용관리

-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
- 시공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
-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

라.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장 적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,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고자 하며
-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곤란하므로 기금적립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므로써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기금적립목표액 상향 조정
-300백만원 ⇒ 600백만원
-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
- 운용기금의 사용 단서조항 삭제
-기금적립금액이 300백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용할 수 없다

마.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기금설치후 활용실적이 전무하여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1항의 개정으로 시·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

2) 주요골자

- 해당 없음.

바.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의 과태료부과대상 중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) 주요골자

- 규제완화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규제조항 폐지
 -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의 고용·해고신고의무 폐지
 -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겸용·전용의무 폐지
 -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규등록후 30일내 업무개시의무 폐지
 - 부동산중개업자 및 보조원의 연수·일반교육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- '99. 4.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
- 상위법에 정하여져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

-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용어등 내용을 정비하고
 - 외국인의 공장설치의 범위 확대
 -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공(시)유재산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%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임.

나.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

-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
-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제도시행 및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임.
- 조례의 제정 취지는,
 -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.
-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.

다.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

○이에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,

-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으로 하고

-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사업과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

-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.

-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.

○그러므로 조성 목표액과 몇 년에 걸쳐 출연할 것인지와 충주시의 재정여건은 어떠한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라.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○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음.

○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, 육성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

○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

○이에 기금적립목표액 3억원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단체운영비 및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적립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있음.

마.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

-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'98. 7. 28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
-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시·도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
- 이에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.

바.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-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중 일부가 '99. 3. 31일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.

4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[질 의]

- 제5조에 마을회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는 부담이 예상되는데?

☛ 답 변 :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넓은 의미의 내용임.

[질 의]

○ 제7조2항2호에 “중요재산의 범위…”를 삭제하는 사유는?

- ☞ 답 변 :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자부의 전국공통 지침 사항임.

[질 의]

○ 제5조의 “마을회관”이란?

- ☞ 답 변 : 여기서의 “마을회관”이란 시 또는 정부 보조를 받아 시설한 회관을 말함.

[질 의]

○ 제17조에 불용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제하는 이유는?

- ☞ 답 변 : 시행령 83조 2항에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임.

[질 의]

○ 민간인이 기증한 건물도 유료화 할수 있는지?

- ☞ 답 변 :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함.

[질 의]

○ 공용면적의 범위는?

- ☞ 답 변 : 공부상의 면적을 말함.

[질 의]

○ 법에는 3~8%로 되어 있는데 제22조 등에는 5%로 일률 적용하는 이유는?

- ☞ 답 변 : 행자부의 준칙에 의함.

나.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

[질 의]

○제7조에 초소등에 감시기구 운영 계획은?

- 답 변 : 추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할 계획

[질 의]

○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은?

- 답 변 : 금지구역 1개소, 제한구역 없음.

다.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[질 의]

○2004년까지 목표액 5억원의 출연 방법은?

- 답 변 : 2003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추진할 계획임.

[질 의]

○기금조성 시기가 적정한지?

- 답 변 : 어려운 시점이나 2000년에 5,000만원을 시작으로 년차적으로 적립 할 계획임.

[질 의]

○제4조중 “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”란?

- ☞ 답 변 : 2003년까지 3억 5,000만원을 조성하고 그후 이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

라. 총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[질 의]

○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유는?

- ☞ 답 변 : 행자부 방침에 모든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

[질 의]

○현재 조성액은?

- ☞ 답 변 : 이자포함 6,300만원

[질 의]

○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유는?

- ☞ 답 변 : 당초 추진할때보다 이율이 50%밖에 안되고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임.

마. 총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

“없음”

바.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[질 의]

○제39조에 의한 충주시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은?

☞ 답 변 : 교육 미필자등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100% 회수는 안됐음.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: 수정의결(별지1)

라.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(별지2)

마.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: 원안가결

바.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: 원안가결

6. 불 입

- 가.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마. 충주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1부
- 바.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[별지 1]

□ 조례명 :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 제③항 다음에 제④항 “기금은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”를 신설하고

제8조 제②항중 “연간 1회”를 “연간 2회”로 한다.

<수정안대비표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기금의관리·운용) ①~③(생략) (신설)	제4조(기금의관리·운용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기금은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8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연간 2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